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1929
----------	-------

제안연월일 : 2025. 8.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5548	이만희의원	'24.11.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4.11.21.)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4.11.21.) 상정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7.29.) 상정
	2205564	김선교의원	'24.11.14	
	2205701	박덕흠의원	'24.11.1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4.12.26.)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7.29.) 상정
	2206777	임미애의원	'24.12.20.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3.20.) 상정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7.29.) 상정

건 명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8410	이원택의원	'25.2.2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5.3.18.)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3.20.) 상정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7.29.) 상정
	2208842	정희용의원	'25.3.1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5.4.21.)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7.29.) 상정
	2209404	윤준병의원	'25.3.27.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6.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7.29.) 상정
	2209457	문대림의원	'25.3.28.	
	2209619	송옥주의원	'25.4.7.	
	2209622	어기구의원	'25.4.7.	
	2209760	문금주의원	'25.4.11.	
	2210169	이원택의원	'25.4.28.	
	2210250	이병진의원	'25.4.30.	
	2210484	박수현의원	'25.5.12.	
	2210296	이병진의원	'25.5.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5.6.19.)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7.29.) 상정
	2211138	서삼석의원	'25.6.2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5.7.9.)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7.29.) 상정
	2211492	신장식의원	'25.7.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5.7.22.)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7.29.) 상정

가.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7.29.)

에서 위 1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7회국회(임시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29.)에

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1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
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농수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소득 및 어가소득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
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가 및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
법상 농수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
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제명을 고려하여 목적 중 “적정한 가격 유지”를 “가격안정 도모”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도별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라. 농림업관측 실시사항을 공급량 파악과 수요량 파악을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을 조사하여 분석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5조의4).

마.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함(안 제5조의7 및 제5조의8 신설).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산물의 계약거래에 대하여 매년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거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 사. 농수산물의 예시가격 결정 시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
- 아.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자. 비축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탁사업자가 매년 3월 말까지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 차. 농산물의 무역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 카. 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각각 도입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 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차액 지급비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을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제5조의4, 제5조의5 및 제5조의6으로 하고, 제5조의4(중전의 제5조)제1항 중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산물의 공급량 파악을 위한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해외시장 정보 등
2. 농산물의 수요량 파악을 위한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 소비 실태 정보 등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7 및 제5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

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협의·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추계
3.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방안
4.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
5.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의 추진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농산물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시·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 및 관리 방안

2. 주산지별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계획

3. 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및 농업시설 정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및 작황 관리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의 논의를 협의체와의 논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정 생산·공급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2.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
3.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장비·기자재의 확충
5.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의 장려
6. 그 밖에 농수산물수급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도 농산물 수급관리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7(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 계획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자단체 지정 수입·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
3. 농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학계, 연구계 등에서 농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⑤ 그 밖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

어야 한다.

1.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 수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학계, 연구계 등에서 수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성을 가진 사람

⑤ 그 밖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계약생산)”을 “(계약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 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 (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를 “생산자단체”로,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이하 “계약거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을 “거래계약을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

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수요자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거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단체등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을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를 한 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5조”를 “제5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를 “계약거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를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 및 처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과잉생산”을 “수급불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를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또는”으로, “농산물을 수매할”를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가격안정”을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채소류 등”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의 비축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농산물의 비축·판매계획 및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탁사업자로부터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판매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수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비축용 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판매실적의 보고, 성과점검 및 의견수렴 등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과잉생산”을 “수급불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9조에 따른 수매와”를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과”로 한다.

제1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 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①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2. 농산물 관세제도의 기본방향
3.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
방향

4. 수입제한 농산물의 연도별 수입계획

5. 제15조제5항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
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③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농산물 무역 관련 업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④ 그 밖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
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
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구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

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확기 산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 및 채소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3(수산물가격안정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

획의 수립·시행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수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는 어류, 해조류 및 패류 등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2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3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수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2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의 추진

1의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1의4. 계약거래의 지원

2의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

제9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4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5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u>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u>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가격안</u> <u>정을 도모함</u> ----- ----- ----- -----.
<신 설>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협의·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추계
3.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방안
4.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
5.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의 추진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농산물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시·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 및 관리 방안

2. 주산지별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계획

3. 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및 농업시설 정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및 작황 관리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의 논의를 협의체와의 논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신 설>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정 생산·공급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2.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
3.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장비·기자재의 확충
5.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의 장려
6. 그 밖에 농수산물수급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u>제5조(농림업관측) ①</u>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② ~ ⑤ (생략) <u>제5조의2</u> (생략)	<u>수립과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5조의4(농림업관측) ①</u> ----- ----- ----- <u>다음 각 호의 사항</u>----- ----- ----- ----- ----- 1. <u>농산물의 공급량 파악을 위한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해외시장 정보 등</u> 2. <u>농산물의 수요량 파악을 위한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 소비 실태 정보 등</u>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5조의5</u> (현행 제5조의2와 같음)
--	--

제5조의3 (생 략)

<신 설>

제5조의6 (현행 제5조의3과 같음)

제5조의7(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산물수급계획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자단체 지정 수입·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

3. 농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학계, 연구계 등에서 농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그 밖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수산물의 수급조

<신 설>

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

	<u>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u> <u>1.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u> <u>2.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u> <u>3. 수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u> <u>4. 학계, 연구계 등에서 수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u> <u>⑤ 그 밖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u>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u>	제6조(계약거래) ① ----- ----- ----- -----<u>생산자단체</u>----- ----- ----- ----- ----- -----

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
(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
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
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생산자와 수요자 간
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
· 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여 이
행하는 거래(이하 “계약거래”라
한다)-----.

② -----
-----거래계약을 이행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
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
활한 공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
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
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
이라 한다) · 수요자와 협의하
여 매년 계약거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
거래 농산물이 공급조절 및 가
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

<신 설>

제8조(가격 예시)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 생산자단체등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가격 예시) ① (현행과 같음)

(2) -----

-----생산

량, 예상 수급상황 및 「공공데

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

료 또는 정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

③ -----

-----협의한
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④ -----

-----.

1. 제5조의4-----

2. 계약거래-----

3.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 및 처분-----

4. 5. (생략)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⑤ (생략)

<신설>

4. 5. (현행과 같음)

제9조(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① -----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또는-----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

-----.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농산물-----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

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의 비축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농산물의 비축·판매계획 및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 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로부터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판매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수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비축용농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매와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수출·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포장·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 ③ (생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

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판매실적의 보고, 성과점검 및 의견수렴 등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과-----

-----.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
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
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
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
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농산
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
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
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 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
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관
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
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
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①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무역
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2. 농산물 관세제도의 기본방향
3.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향
4. 수입제한 농산물의 연도별 수입계획
5. 제15조제5항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 ③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신 설>

한다.

1. 농산물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

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농산물 무역 관련
업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무역정책심
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
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
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농
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
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확기 산지가격 등을 고려하
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

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 및 채소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

<신 설>

율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조
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
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
른 경작·출하 신고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3(수산물가격안정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시
행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의 해
당 연도 평균가격(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의 거래가격 및 「수산물 유통
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

물산지위판장에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 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수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어류, 해조류 및 패류 등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가
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
우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출
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
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
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2에 따른 차액의 지
급비율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신 설>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3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수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2. (생략) 2의2. (생략) <u><신설></u> 3. ~ 5. (생략) ③ ~ ⑤ (생략) 제9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3.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u> <u>④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의 추진</u> <u>1의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u> <u>1의4. 계약거래의 지원</u> 2. (현행과 같음) 2의2. (현행과 같음) <u>2의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u>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 3. (생 략) 3의2. (생 략) 4. (생 략) 4의2. (생 략) 5. · 6. (생 략) ④ (생 략)	----- -----.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4의2.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5의2.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